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5나2241 판결

[도로시설등철거등]

서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15나2241 도로시설등철거 등
원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피고,항소인	세일철강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 18. 선고 2009가단61620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 13. 선고 2011나1158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7479 판결
변론종결	2016. 11. 18.
판결선고	2017. 2. 3.

주 문

1. 환송 후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8,888,451원과 그 중 16,007,049원에 대해서는 2010. 4. 23.부터, 42,881,402원에 대해서는 2016. 9. 3.부터 각 2017. 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B에게,

가) 52,479,643원과 그 중 12,963,319원에 대해서는 2010. 4. 23.부터, 39,516,324원에 대해서는 2016. 9. 3.부터 각 2017. 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 2016. 9. 3.부터 이천시 E 잡종지 1,863m²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25, 24, 23, 22, 21, 2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도로 1,659m²,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인도 204m²에 관한 피고의 사용종료일 또는 원고 B의 위 토지 중 6,272/21,620 지분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487,76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다) 2016. 9. 3.부터 이천시 F 잡종지 5,472m²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30, 29, 28, 27, 26, 2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도로 177m² 같은 도면 표시 24, 25, 26, 27, 28,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인도 19m²에 관한 피고의 사용종료일 또는 원고 B의 위 토지 중 1/2 지분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88,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3) 원고 C에게,

가) 2,623,980원과 그 중 648,165원에 대해서는 2010. 4. 23.부터, 1,975,815원에 대해서는 2016. 9. 3.부터 각 2017. 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 2016. 9. 3.부터 위 2)의 나)항 기재 도로 및 인도에 관한 피고의 사용종료일 또는 원고 C의 위 2)의 나)항 기재 토지 중 313.6/21,620 지분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24,38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다) 2016. 9. 3.부터 위 2)의 다)항 기재 도로 및 인도에 관한 피고의 사용종료일 또는 원고 C의 위 2)의 다)항 기재 토지 중 1/40 지분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4,4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4) 원고 D에게,

가) 49,855,659원과 그 중 12,315,152원에 대해서는 2010. 4. 23.부터, 37,540,507원에 대해서는 2016. 9. 3.부터 각 2017. 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 2016. 9. 3.부터 위 2)의 나)항 기재 도로 및 인도에 관한 피고의 사용종료일 또는 원고 D의 위 2)의 나)항 기재 토지 중 5,958.4/21,620 지분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463,37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다) 2016. 9. 3.부터 위 2)의 다)항 기재 도로 및 인도에 관한 피고의 사용종료일 또는 원고 D의 위 2)의 다)항 기재 토지 중 19/40 지분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83,7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9,205,269원, 원고 B에게 44,801,993원, 원고 C에게 2,240,099원, 원고 D에게 42,561,89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4. 23.부터 2016. 9.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016. 9. 3.부터 이천시 E 잡종지 1,863m²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25, 24, 23, 22, 21, 2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도로 1,659m²,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인도 204m²의 사용종료일까지 원고 B에게 월 487,762원의, 원고 C에게 월 24,388원의, 원고 D에게 월 463,374원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위 E 토지 중 ㄱ 부분 도로 1,659m², ㄴ 부분 인도 204m²의 각 철거 및 위 각 토지 부분 합계 1,863m²의 인도 청구는 환송 후 당심에서 취하되고, 대신 임료 상당의 금원 지급청구가 확장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 B에게 7,677,651원, 원고 C에게 383,881원, 원고 D에게 7,293,76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4. 23.부터 2016. 9.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016. 9. 3.부터 이천시 F 잡종지 5,472m²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30, 29, 28, 27, 26, 2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분부 도로 177m², 같은 도면 표시 24, 25, 26, 27, 28,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인도 19m²의 사용종료일까지 원고 B에게 월 88,200원의, 원고 C에게 월 4,410원의, 원고 D에게 월 83,79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위 F 잡종지 5,472m² 중 ㄴ 부분 법면 867m², ㄷ 부분 도로 177m², ㄹ 부분 인도 19m²의 각 철거 및 위 각 토지 부분 합계 1,063m²의 인도 청구는 환송 후 당심에서 취하되고, 대신 임료 상당의 금원 지급청구가 확장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천시 G 잡종지 21,620m²는 소외 H이 소유하다가 1992. 11. 28. 9,717/21,620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1993. 1. 13. 위 G 토지 중 잡종지 11,903m²가 분할되어 I 지번이 부여되었으며, 1993.

2. 5. 위 I 지번은 H의 소유로, G 지번은 주식회사 한양의 소유로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졌다.

나. H 소유의 위 I 잡종지 11,903m²에 대하여는 원고 주식회사 A가 2002. 4. 17. 9,717/21,62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소외 J이 2004. 2. 21. 각 5,951.5/21,62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위 I 토지에 대하여 2004. 12. 6. 그 중 1,863m²가 이천시 E 잡종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로, 5,472m²가 F 잡종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는데, 원고 주식회사 A는 같은 날 이 사건 제1토지 중 각 320.5/21,62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소외 J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원고 주식회사 A, 원고 B, 소외 J 사이에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원고 B, 소외 J이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분할되고 남은 위 I 잡종지 4,568m²에 관하여 같은 날 토지 주식회사 A, 원고 B, 소외 J 사이에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주식회사 A가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고, 주식회사 A는 위 I 잡종지 4,568m²에 관하여 2004. 12. 15. T, U, V에게 2004. 8.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2008. 6. 10.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외 J의 지분 중 313.6/21,620 지분에 관하여 원고 C이, 5,958.4/21,620 지분에 관하여 원고 D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외 J의 지분 중 1/40 지분에 관하여 원고 C이, 19/40 지분에 관하여 원고 D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제1토지 중 원고 주식회사 A의 지분 9,076/21,620은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되어 2015. 12. 22. 피고가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위 지분을 취득하였다. 2008. 6. 10.부터의 이 사건 제1, 제2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지분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제1토지 1,863㎡			이 사건 제2토지 5,472㎡	
원고	지분		원고	지분
주식회사 A	2015. 12. 21.까지	9,076 / 21,620		
	2015. 12. 22.부터	없음		
B	6,272 / 21,620		B	1 / 2
C	313.6 / 21,620		C	1 / 40
D	5,958.4 / 21,620		D	19 / 40

마. 피고는 2001년 12월경부터 이천시 K 및 L 일대의 공장용지를 주식회사 한양 및 콜럼버스코아퍼레이션 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였고, 2002년경 ①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25, 24, 23, 22, 21, 2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659m²(이하 '별지 제1도면 그 부분'이라고 한다)에 아스콘 포장을 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04m²(이하 '별지 제1도면 ㄴ 부분'이라고 한다) 인도로 사용하고 있고, ②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30, 29, 28, 27, 26, 2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77m²(이하 '별지 제2도면 ㄷ 부분'이라고 한다)에 아스콘 포장을 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같은 도면 표시 24, 25, 26, 27, 28,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9m²(이하 '별지 제2도면 ㄹ 부분'이라고 한다)를 인도로 사용하고 있다(이하 위 각 도로 및 인도를 통틀어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8, 11, 12호증, 을 1, 5, 8, 10, 32호증(각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보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 완성

1)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로서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취득시효에 관한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승역지를 늘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1095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취득시효기간을 계산할 때에, 점유기간 중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으며,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그에 더 잡아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9987 판결 등 참조). 한편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822 판결 등 참조). 소유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는 지역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민법 제294조에 의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갑 제9 내지 12호증, 을 제6, 7, 8, 10, 11, 15, 16호증(각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법원의 이천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증인 H, N, 환송 전 당심 증인 S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주식회사 한양은 1985년경 자신이 소유하던 이천시 K, L 등 일대의 공장용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등으로 도로를 개설한 이래 줄곧 이 사건 각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여 온 사실, 당시 주식회사 한양이 개설한 도로의 폭과 위치 등의 상황이 이 사건 통행로의 현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원고 주식회사 A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이천시 I 토지 중 일부 공유지분을 취득할 당시에도 위 각 도로가 개설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2001년 12월경 주식회사 한양으로부터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현재의 모습과 같이 아스콘 포장을 시행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도로와 인도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 주식회사 A가 2002. 4. 17.에, 원고 B와 J(원고 C, D의 피상속인)이 2004. 2. 21.에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이천시 I 토지 중 일부 공유지분을 각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 주식회사 A, B와 위 J이 이 사건 제1 토지와 제2토지에 관한 각 공유지분을 취득한 시기가 주식회사 한양이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한 1985년경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기 전인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한양이 1985년경 이 사건 통행로를 개설하여 사용한 이래 피고가 2001년 12월경 주식회사 한양으로부터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에도 이 사건 통행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인 상태가 20년 이상 표현되었고, 원고 주식회사 A, B과 J이 승역지인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각 공유지분을 취득한 시기는 그 20년이 경과하기 전이므로, 2005년 말경에는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 중 이 사건 통행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보상책임의 발생

1) 통행지역권의 경우에 지역의 대가로서의 지료는 그 요건이 아니다. 그렇지만,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가 인정되면, 도로가 개설된 상태에서 승역지가 이용되고 또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어 승역지 소유자의 승역지에 대한 사용 및 소유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주게 되므로 그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승역지 소유자를 적절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한편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는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늘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를 전제로 하는데, 도로 개설에 의한 종전의 승역지 사용이 무상으로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취득시효 전에는 그 사용에 관한 지료 지급의무를 지거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므로, 이러한 상태에서의 도로 개설·사용을 전제로 하여 시효 취득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민법 제219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는 한편, 그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통행지역권은 용익물권으로서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은 상린관계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과는 그 권리의 성질 및 성립 근거가 다르지만 인접한 토지 소유자 사이에서 통로 개설에 의한 통행 이용에 관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유사하다.

이와 같이 도로 설치에 의한 사용을 근거로 영구적인 통행지역권이 인정되는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여러 사정들과 아울러 주위토지통행권과의 유사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전의 승역지 사용이 무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행지역권을 취득시효한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에 대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요역지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이 사건 통행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해 피고는 '주식회사 한양이 이 사건 통행로를 개설할 때 H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동의를 받은 것이고, 피고가 주식회사 한양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원고들 또한 H의 지위를 승계하였거나 무상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 제1심 증인 N, 환송 전 당심 증인 S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보상의 범위 -임료 상당액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통행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임료 상당액이다. 이 사건 통행로는 그 지목인 잡종지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통행로는 H이 이천시 G 토지를 매입한 직후부터 요역지인 피고의 토지를 위해 도로로 사용되었다. 피고는 요역지를 매입한 이후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통행로를 계속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2005년말에 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다. 피고가 통행지역권을 취득할 당시인 2005년경 이 사건 통행로는 그 현황이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통행로는 도로인 현황대로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은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태에 따른 통행지의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보아도 이 사건 통행로는 도로인 현황대로 평가해야 한다.

(2)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를 통행함에 그치고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지 않고 있다면 임료 상당액 전부가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라고 볼 수 없다.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은, 쌍방 토지의 토지소유권 취득시기와 가격, 통행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본래 용도예의 사용 가능성, 통행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지,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통행로를 주식회사 한화건설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제2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 B, C, D 역시 이 사건 통행로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감경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인하여 그 토지 소유자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토지의 임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153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한양에 의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에 이 사건 통행로가 개설되어 주식회사 한양 내지 피고 소유의 공장용지의 편익을 위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계속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20년 이상 표현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한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가 시효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통행로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이는 주식회사 한양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통행로를 개설하고 주식회사 한양 내지 피고가 그 소유 공장용지의 편익을 위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계속 사용한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요역지 소유자인 피고가 승역지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통행로는 주식회사 한양이 이 사건 통행로를 개설할 당시의 현황대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피고가 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통행로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도로로 평가할 수 없다.

주식회사 한양이 이 사건 통행로를 개설하여 이를 공장용지의 편익을 위하여 사용하기 시작할 당시의 현황에 관해 보건대, 을 제1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H, N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이천시장의 2010. 8. 30.자 회보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가 상고이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1981년 4월 항공사진의 영상 포함)를 더하면, 주식

회사 한양이 1985년경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등으로 도로를 개설하기 전까지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 중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은 도로로 사용되지 않았고 그 지목대로 잡종지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상해야 하는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 중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은 그 지목에 따라 잡종지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 내지 영상, 환송 전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제1심 감정인 M의 감정 평가서 마지막 두 페이지에 첨부된 사진들의 영상 포함)를 더하면, 이 사건 제1토지 전부와 이 사건 제2토지 중 이 사건 통행로에 해당하는 부분은 콘크리트와 아스콘 등으로 포장되어 피고의 공장용지에 출입하는 차량 및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와 인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통행로 중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는 폭이 약 6미터에 이르는 왕복 2차선 도로로서 대형트럭이 교차하여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인 사실, 이 사건 제2토지 중 이 사건 통행로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사이에는 상당한 높이 차이가 있어 별지 제2도면에 표시된 L 부분과 같이 법면(경사면)이 형성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제2토지 중 이 사건 통행로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빈 공터로 숲이 우거져 있고 상당한 기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주식회사 한양이 1985년경 공장용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제1, 2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등으로 도로를 개설한 이래 주식회사 한양과 피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여 왔고, 당시 주식회사 한양이 개설한 도로의 폭과 위치 등의 상황이 현재 이 사건 통행로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실, 주식회사 한양이 위와 같이 도로를 개설하기 전까지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 중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은 도로로 사용되지 않았고 그 지목대로 잡종지 상태였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토지 전부와 이 사건 제2토지 중 이 사건 통행로에 해당하는 부분은 도로로 개설될 무렵부터 위와 같이 도로로 포장되어 그 본래 용도인 잡종지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 사건 통행로는 그 형상과 사용현황에 비추어 이 사건 제2토지 중 이 사건 통행로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의 편익을 위해 사용하기 어려우며 실제로도 그렇게 사용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요역지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통행로의 소유자인 원고들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로 배타적인 점유를 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토지 중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을 그 본래의 용도 등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 중 이 사건 통행로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한편, 이 사건 통행로를 요역지의 소유자인 피고뿐 아니라 주식회사 한화건설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승역지를 늘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주위토지통행권의 경우와 달리 복수의 당사자가 시효취득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시효로 취득한 통행지역권은 그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고 그 내용이 승역지 소유자인 원고들의 점유·사용을 배제할 정도로 배타적인 것인 점, 이 사건 통행로는 폭이 6미터에 이르는 아스콘 포장이 된 도로와 인도로 구성된 것인바 주식회사 한화건설이 이를 함께 사용하는지 여부는 승역지 소유자인 원고들의 손해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주식회사 한화건설이 이 사건 통행로를 사용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 등 권원이 있는지에 관해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바 주식회사 한화건설은 피고의 통행지역권에 터 잡아 이 사건 통행로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주식회사 한화건설이 이 사건 통행로의 개설이나 유지 등에 관여하였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4. 12. 14. 선고 2013다

11669 판결은 주위 토지통행권자가 단지 공로에 이르는 통로로서 통행함에 그치고 토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로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아니한 사안에 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임료 상당액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손해보상액의 계산

1)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임료감정결과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제2도면 ㄷ, ㄹ 부분에 대한 임료감정결과 제1심 감정인 M의 임료감정결과, 환송 후 당심 법원의 W에 대한 각 임료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2토지 중 이 사건 통행로에 해당하는 부분을 잡종지로 평가한 임료는 다음 각 표의 기재와 같다[제1심 감정인 M의 임료감정결과 중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것은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제2도면 ㄴ, ㄷ, ㄹ 부분에 대한 임료이므로,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제2도면 ㄷ, ㄹ 부분의 임료는 위 임료감정결과에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제2도면 ㄴ, ㄷ, ㄹ 부분의 면적 1,063㎡(= 867㎡ + 177㎡ + 19㎡)에 대한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제2도면 ㄷ, ㄹ 부분의 면적 196㎡(= 177㎡ + 19㎡)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하 원 미만 버림].

임료산정기간	제1토지 ㄴ, ㄹ 부분	
	월 임료(원)	기간 임료(원)
2004. 12. 10. ~ 2005. 12. 9.	424,760	5,097,120
2005. 12. 10. ~ 2006. 12. 9.	478,170	5,738,040
2006. 12. 10. ~ 2007. 12. 9.	608,580	7,302,960
2007. 12. 10. ~ 2008. 12. 9.	710,420	8,525,040
2008. 12. 10. ~ 2009. 12. 9.	704,830	8,457,960
2009. 12. 10. ~ 2010. 4. 22.	683,100	3,009,380
2010. 4. 23. ~ 2011. 4. 22.	1,415,880	16,990,560
2011. 4. 23. ~ 2012. 4. 22.	1,406,560	16,878,780
2012. 4. 23. ~ 2013. 4. 22.	1,476,420	17,717,130
2013. 4. 23. ~ 2014. 4. 22.	1,513,680	18,164,250
2014. 4. 23. ~ 2015. 4. 22.	1,583,550	19,002,600
2015. 4. 23. ~ 2016. 2. 20.	1,681,350	16,758,440

임료산정기간	제2토지 ㄷ, ㄹ 부분	
	월 임료(원)	기간 임료(원)
2004. 12. 10. ~ 2005. 12. 9.	42,515 ¹⁾	510,182 ²⁾
2005. 12. 10. ~ 2006. 12. 9.	47,692 ³⁾	572,312 ⁴⁾

1

2

3

4

2006. 12. 10. ~ 2007. 12. 9.	60,760 ⁵⁾	729,120 ⁶⁾
2007. 12. 10. ~ 2008. 12. 9.	70,788 ⁷⁾	849,463 ⁸⁾
2008. 12. 10. ~ 2009. 12. 9.	70,231 ⁹⁾	842,781 ¹⁰⁾
2009. 12. 10. ~ 2010. 4. 22.	67,945 ¹¹⁾	299,330 ¹²⁾
2010. 4. 23. ~ 2011. 4. 22.	140,140	1,681,680
2011. 4. 23. ~ 2012. 4. 22.	139,160	1,669,920
2012. 4. 23. ~ 2013. 4. 22.	146,020	1,752,240
2013. 4. 23. ~ 2014. 4. 22.	149,940	1,799,280
2014. 4. 23. ~ 2015. 4. 22.	156,800	1,881,600
2015. 4. 23. ~ 2016. 4. 22.	166,600	1,999,200
2016. 4. 23. ~ 2016. 10. 20.	176,400	1,049,700

5

6

7

8

9

10

11

12



2)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손해보상액

가) 2004. 12. 10.부터 2010. 4. 22.까지의 임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2004. 12. 10.부터 2010. 4. 22.까지의 임료 합계액은 38,130,500원(= 5,097,120원 + 5,738,040원 + 7,302,960원 + 8,525,040원 + 8,457,960원 + 3,009,380원)이다. 이를 원고들의 지분별로 안 분하면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J의 생전 손해보상청구권은 원고 C, D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따라 아래 지분비율로 상속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지분	지분별 임료(원)
주식회사 A	9,076 / 21,620	16,007,049
B	6,272 / 21,620	11,061,725
C	313.6 / 21,620	553,086
D	5,958.4 / 21,620	10,508,638

나) 2010. 4. 23.부터 2016. 9. 2.까지의 임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2010. 4. 23.부터 2016. 2. 20.까지의 임료는 105,511,760원(= 16,990,560원 + 16,878,780원 + 17,717,130원 + 18,164,250원 + 19,002,600원 + 16,758,440원)이고, 2016. 2. 21.부터 2016. 8. 20.까지의 임료는 10,088,100원(= 1,681,350원 × 6개월)이며, 2016. 8. 21.부터 2016. 9. 2.까지의 임료는 705,082원(= 1,681,350원 × 13일/31일)이다.

결국,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2010. 4. 23.부터 2016. 9. 2.까지의 임료는 116,304,942원(= 105,511,760원 + 10,088,100원 + 705,082원)이다. 이를 원고들의 지분별로 계산하면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이 사건 제1토지 중 원고 주식회사 A의 지분 9,076/21,620은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되어 2015. 12. 22. 피고가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위 지분을 취득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A는 같은 날 위 지분을 상실하였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위 지분에 대한 피고의 이전등기일인 2016. 1. 5.까지 위 지분을 소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압류된 부동산이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된 경우에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했을 때 그 부동산을 승계취득하게 되므로(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 참조), 위와 같이 인정한다].

원고	지분		지분별 임료(원)	
	2015.12.21.까지	2015.12.22.부터	2015.12.21.까지	2015.12.22.부터
주식회사 A	9,076 / 21,620	없음	42,881,402 ¹³⁾	없음
B	6,272 / 21,620		33,740,268	
C	313.6 / 21,620		1,687,013	
D	5,958.4 / 21,620		32,053,254	

13

다) 2016. 9. 3. 이후의 임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2016. 9. 3. 이후의 임료는 월 1,681,35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원고 B, C, D의 지분별로 계산하면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원고	지분	지분별 월 임료(원)
B	6,272 / 21,620	487,762
C	313.6 / 21,620	24,388
D	5,958.4 / 21,620	463,374

라) 정리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손해보상으로,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8,888,451원(= 16,007,049원 + 42,881,402원)을, 원고 B에게 44,801,993원(= 11,061,725원 + 33,740,268원)과 2016. 9. 3.부터 이 사건 제1토지(별지 제1도면 ㄱ, ㄴ 부분) 사용종료일 또는 위 원고의 지분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487,76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2,240,099원(= 553,086원 + 1,687,013원)과 2016. 9. 3.부터 이 사건 제1토지(별지 제1도면 ㄱ, ㄴ 부분) 사용종료일 또는 위 원고의 지분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24,38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D에게 42,561,892원(= 10,508,638원 + 32,053,254원)과 2016. 9. 3.부터 이 사건 제1토지(별지 제1도면 ㄱ, ㄴ 부분) 사용종료일 또는 위 원고의 지분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463,37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지연손해금

원고 주식회사 A는 위 58,888,451원, 원고 B는 위 44,801,993원, 원고 C는 위 2,240,099원, 원고 D는 위 42,561,892원에 대하여 2010. 4. 23.부터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런데, 위 각 돈에는 2010. 4. 23. 이후에 발생한 임료 상당의 손해보상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각 돈 전부에 대하여 2010. 4. 23.부터 지연손해금을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2010. 4. 22.까지 발생한 임료 상당의 손해보상금(원고 주식회사 A는 16,007,049원, 원고 B는 11,061,725원, 원고 C는 553,086원, 원고 D는 10,508,638원)에 대해서만 2010. 4. 23.부터 지연손해금을 산정하고, 2010. 4. 23. 이후에 발생한 임료상당의 손해보상금(원고 주식회사 A는 42,881,402원, 원고 B는 33,740,268원, 원고 C는 1,687,013원, 원고 D는 32,053,254원)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2016. 8. 3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9. 3.부터 지연손해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3)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제2도면 ㄷ, ㄹ 부분에 관한 손해보상액

가) 2004. 12. 10.부터 2010. 4. 22.까지의 임료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제2도면 ㄷ, ㄹ 부분에 관한 2004. 12. 10.부터 2010. 4. 22.까지의 임료 합계액은 3,803,188원(= 510,182원 + 572,312원 + 729,120원 + 849,463원 + 842,781원 + 299,330원)이다. 이를 원고들의 지분별로 안분하면 다음표의 기재와 같다(J의 생전 손해보상청구권은 원고 C, D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따라 아래 지분비율로 상속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지분	지분별 임료(원)
B	1/2	1,901,594
C	1/40	95,079
D	19/40	1,806,514

나) 2010. 4. 23.부터 2016. 9. 2.까지의 임료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제2도면 ㄷ, ㄹ 부분에 관한 2010. 4. 23.부터 2016. 4. 22.까지의 임료는 10,783,920원 (= 1,681,680원 + 1,669,920원 + 1,752,240원 + 1,799,280원 + 1,881,600원 + 1,999,200원)이고, 2016. 4. 23.부터 2016. 9. 2.까지의 임료는 768,193원[= (176,400원 × 4개월) + (176,400 × 11일/31일)]이다.

결국,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제2도면 ㄷ, ㄹ 부분에 관한 2010. 4. 23.부터 2016. 9. 2.까지의 임료는 11,552,113원 (= 10,783,920원 + 768,193원)이다. 이를 원고들의 지분별로 계산하면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원고	지분	지분별 임료(원)
B	1/2	5,776,056
C	1/40	288,802
D	19/40	5,487,253

다) 2016. 9. 3. 이후의 임료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제2도면 ㄷ, ㄹ 부분에 관한 2016. 9. 3. 이후의 임료는 월 176,4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원고들의 지분별로 계산하면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원고	지분	지분별 임료(원)
B	1/2	88,200
C	1/40	4,410
D	19/40	83,790

라) 정리

피고는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제2도면 ㄷ, ㄹ 부분에 관한 손해보상으로, 원고 B에게 7,677,650원 (= 1,901,594원 + 5,776,056원)과 2016. 9. 3.부터 위 ㄷ, ㄹ 부분 사용종료일 또는 위 원고의 지분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88,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383,881원 (= 95,079원 + 288,802원)과 2016. 9. 3.부터 위 ㄷ, ㄹ 부분 사용종료일 또는 위 원고의 지분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4,4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D에게 7,293,767

원(= 1,806,514원 + 5,487,253원)과 2016. 9. 3.부터 위 ㄷ, ㄹ 부분 사용종료일 또는 위 원고의 지분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83,7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지연손해금

원고 B은 위 7,677,650원, 원고 C은 위 383,881원, 원고 D은 위 7,293,767원에 대하여 2010. 4. 23.부터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런데, 위 각 돈에는 2010. 4. 23. 이후에 발생한 임료 상당의 손해보상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각 돈 전부에 대하여 2010. 4. 23.부터 지연손해금을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2010. 4. 22.까지 발생한 임료 상당의 손해보상금(원고 B은 1,901,594원, 원고 C은 95,079원, 원고 D은 1,806,514원)에 대해서만 2010. 4. 23.부터 지연손해금을 산정하고, 2010. 4. 23. 이후에 발생한 임료 상당의 손해보상금(원고 B은 5,776,056원, 원고 C은 288,802원, 원고 D은 5,487,253원)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2016. 8. 31.자 청구 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9. 3.부터 지연손해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마.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제1, 2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피고 소유의 이천시 O 잡종지 492m², P 도로 17m², Q 도로 454m², R 도로 532m²를 통행하며 사용하고 있다. 만일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사용함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면, 원고들 역시 같은 이유로 피고 소유의 위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위 토지들을 모두 도로로 평가한 2004. 12. 10.부터 2016. 2. 20.까지 임료 합계는 38,129,130원이고, 2016. 2. 20.경의 월 임료는 356,300원인바,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38,129,130원 및 2016. 2. 20.경부터 월 356,300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만일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잡종지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피고에 대한 채권을 가진다면, 피고는 위 O 토지를 잡종지로 평가한 금액 59,588,370원을 기준으로 상계한다.

2) 판단

원고 주식회사 A가 2015. 12. 21.까지 이 사건 제1토지 중 일부 지분을 소유하였고, 원고 B, C, D이 이 사건 제1, 2토지의 각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제1토지 전부와 이 사건 제2토지 중 이 사건 통행로에 해당하는 부분은 도로로 개설될 무렵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도로로 포장되어 그 본래 용도인 잡종지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 사건 통행로는 그 형상과 사용현황에 비추어 이 사건 제2토지 중 이 사건 통행로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의 편익을 위해 사용하기 어려우며 실제로도 그렇게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2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피고 소유의 토지를 통행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상계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론

1)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손해보상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손해보상으로, ①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8,888,451원과 그 중 16,007,049원에 대해서는 2010. 4. 23.부터, 42,881,402원에 대해서는 2016. 9. 3.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환송 후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원고 B에게 44,801,993원과 그 중 11,061,725원에 대해서는 2010. 4. 23.부터, 33,740,268원에 대해서는 2016. 9. 3.부터 각 환송 후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6. 9. 3.부터 이 사건 제1토지(별지 제1도면 ㄱ, 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사용종료일 또는 원고 B의 이 사건 제1토지 중 6,272/21,620 지분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487,76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③ 원고 C에게 2,240,099원과 그 중 553,086원에 대해서는 2010. 4. 23.부터, 1,687,013원에 대해서는 2016. 9. 3.부터 각 환송 후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6. 9. 3.부터 이 사건 제1토지(별지 제1도면 ㄱ, 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사용종료일 또는 원고 C의 이 사건 제1토지 중 313.6/21,620 지분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24,38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④ 원고 D에게 42,561,892원과 그 중 10,508,638원에 대해서는 2010. 4. 23.부터, 32,053,254원에 대해서는 2016. 9. 3.부터 각 환송 후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6. 9. 3.부터 이 사건 제1토지(별지 제1도면 ㄱ, 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사용종료일 또는 원고 D의 이 사건 제1토지 중 5,958.4/21,620 지분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463,37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제2도면 ㄷ, ㄹ 부분에 관한 손해보상

피고는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제2도면 ㄷ, ㄹ 부분에 관한 손해보상으로, ① 원고 B에게 7,677,650원과 그 중 1,901,594원에 대해서는 2010. 4. 23.부터, 5,776,056원에 대해서는 2016. 9. 3.부터 각 환송 후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6. 9. 3.부터 위 ㄷ, ㄹ 부분에 관한 피고의 사용종료일 또는 원고 B의 이 사건 제2토지 중 1/2 지분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88,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원고 C에게 383,881원과 그 중 95,079원에 대해서는 2010. 4. 23.부터, 288,802원에 대해서는 2016. 9. 3.부터 각 환송 후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6. 9. 3.부터 위 ㄷ, ㄹ 부분에 관한 피고의 사용종료일 또는 원고 C의 이 사건 제2토지 중 1/40 지분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4,4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③ 원고 D에게 7,293,767원과

그 중 1,806,514원에 대해서는 2010. 4. 23.부터 5,487,253원에 대해서는 2016. 9. 3.부터 각 환송 후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6. 9. 3.부터 위 ㄷ, ㄹ 부분에 관한 피고의 사용종료일 또는 원고 D의 이 사건 제2토지 중 19/40 지분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83,7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종합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손해보상과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제2도면 ㄷ, ㄹ 부분에 관한 손해보상을 종합하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8,888,451원과 그 중 16,007,049원에 대해서는 2010. 4. 23.부터, 42,881,402원에 대해서는 2016. 9. 3.부터 각 2017. 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 B에게, ① 52,479,643원(= 44,801,993원 + 7,677,650원)과 그 중 12,963,319원(= 11,061,725원 + 1,901,594원)에 대해서는 2010. 4. 23.부터, 39,516,324원(= 33,740,268원 + 5,776,056원)에 대해서는 2016. 9. 3.부터 각 2017. 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2016. 9. 3.부터 이 사건 제1토지(별지 제1도면 ㄱ, 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사용종료일 또는 원고 B의 이 사건 제1토지 중 6,272/21,620 지분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487,76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③ 2016. 9. 3.부터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제2도면 ㄷ, ㄹ 부분에 관한 피고의 사용종료일 또는 원고 B의 이 사건 제2토지 중 1/2 지분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88,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원고 C에게, ① 2,623,980원(= 2,240,099원 + 383,881원)과 그 중 648,165원(= 553,086원 + 95,079원)에 대해서는 2010. 4. 23.부터, 1,975,815원(= 1,687,013원 + 288,802원)에 대해서는 2016. 9. 3.부터 각 2017. 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2016. 9. 3.부터 이 사건 제1토지(별지 제1도면 ㄱ, 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사용종료일 또는 원고 C의 이 사건 제1토지 중 313.6/21,620 지분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24,38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③ 2016. 9. 3.부터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제2도면 ㄷ, ㄹ 부분에 관한 피고의 사용종료일 또는 원고 C의 이 사건 제2토지 중 1/40 지분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4,4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는 원고 D에게, ① 49,855,659원(= 42,561,892원 + 7,293,767원)과 그 중 12,315,152원(= 10,508,638원 + 1,806,514원)에 대해서는 2010. 4. 23.부터, 37,540,507원(= 32,053,254원 + 5,487,253원)에 대해서는 2016. 9. 3.부터 각 2017.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2016. 9. 3.부터 이 사건 제1토지(별지 제1도면 ㄱ, 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사용종료일 또는 원고 D의 이 사건 제1토지 중 5,958.4/21,620 지분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463,37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며, ③ 2016. 9. 3.부터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제2도면 ㄷ, ㄹ 부분에 관한 피고의 사용종료일 또는 원고 D의 이 사건 제2토지 중 19/40 지분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83,7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 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환송 후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숙희(재판장) 원용일 윤진규

별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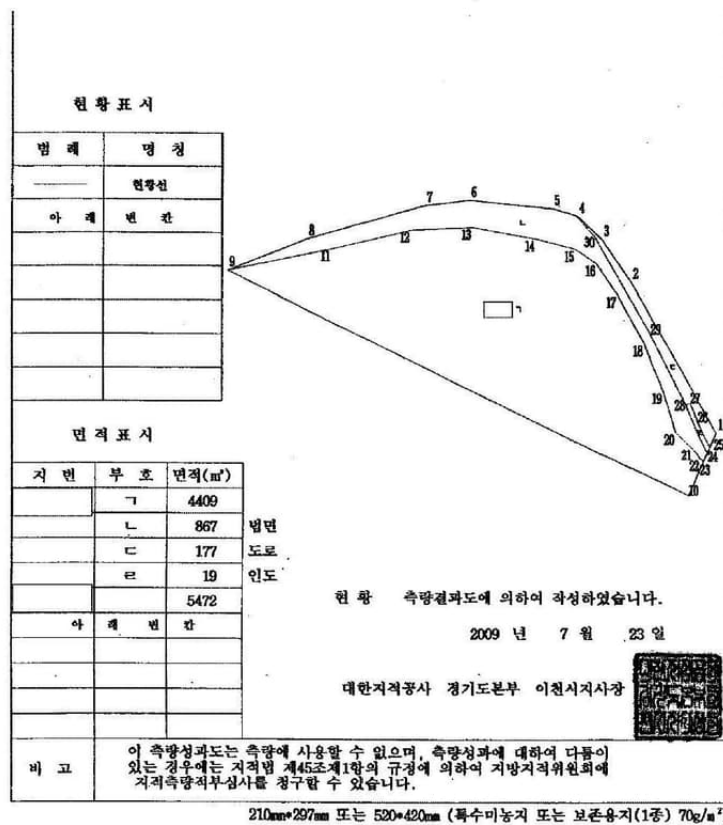


제 1 조면

210mm×297mm 또는 520×420mm (복수미농지 또는 보론용지(1종) 70g/m²)

[별지]

제 2 도면



1 230,580원 × 196m²/1,063m²

2 2,766,960원 × 196m²/1,063m²

3 258,660원 × 196m²/1,063m²

4 3,103,920원 × 196m²/1,063m²

5 329,530원 × 196m²/1,063m²

6 3,954,360원 × 196m²/1,063m²

7 383,920원 × 196m²/1,063m²

8 $4,607,040\text{원} \times 196\text{m}^2/1,063\text{m}$

9 $380,900\text{원} \times 196\text{m}^2/1,063\text{m}^2$

10 $4,570,800\text{원} \times 196\text{m}^2/1,063\text{m}^2$

11 $368,500\text{원} \times 196\text{m}^2/1,063\text{m}^2$

12 $1,623,410\text{원} \times 196\text{m}^2/1,063\text{m}^2$

13 2010. 4. 23.부터 2015. 12. 21.까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임료 합계액은 102,148,075원[= 16,990,560원 + 16,878,780원 + 17,717,130원 + 18,164,250원 + 19,002,600원 + 13,394,755원(=1,681,350원 × 7개월 + 1,681,350원 × 29일/30일)]이고, 여기에 원고 주식회사 A의 지분 9,076/21,620을 곱하면 42,881,402원이 된다.

